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3. 5.29(수)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3. 6. 21(금)

다. 상정일자 : 2013. 6. 21(금)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도시주택과장)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는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광진흥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현장 직접교육에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 이러한 3가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규모로 봐서는 부분 개정에 해당되나 전면적인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게 전면개정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

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7.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창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허가 및 신고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

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별지 제2호 서식)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는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는 여성으로 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주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평창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주민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주민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도지사와 사전협의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외국어를 병기하는 구역의 범위
2.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창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⑧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⑨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이 간사가 되고 주무관은 서기가 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

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 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별지 제6호 서식 작성)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및 인수증(별지 제9호 서식)을 받는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별지 제11호 서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 · 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확정된 이후라도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필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하고 교육이수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불참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되었을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14

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이수대장(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평창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과 협의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